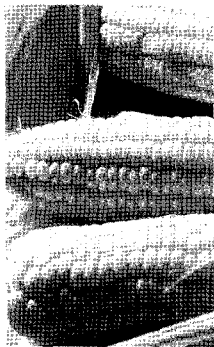


— **골판지용 양허관세/할당관세 적용품목** www.kcca.or.kr



골판지용(옥수수전분, 변성전분, 매니옥전분) 양허관세 적용품목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2010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
- 2010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배정계획 공고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공고 제2010-1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27호(2009. 12. 24)]에 의거 우리조합의 양허관세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2010. 1. 4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 1 부 양허관세추천

제 1조(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양허관세 대상품목(이하 '원자재' 라 한다)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이하 '양허관세 추천' 이라 한다) 및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하 '골판지조합' 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자재를 양허관세 추천받은 실수요자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조(대상품목)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H · S	'10 C/S 물량	품명	비고
옥수수전분	1108.12.9000	37,000톤	옥수수(전분/기타)	공업용(골판지용 등)
	1108.13.0000		감자전분	
변성전분	3505.10.9090	800톤	기타변성전분(기타)	공업용(골판지용)
	3505.20.1000		전분글루	
	3505.20.9000		기타글루	
매니옥전분	1108.14.9000	77톤	매니옥전분	공업용(골판지용)

제 3조(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는 다음 1호와 같다.

1. 옥수수전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

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지를 생산하는 자
나. 음·식료품 등을 포장하는 포장재로써 전분용기를 생산하는 자

2. 변성전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지를 생산하는 자

제 4조(추천물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물량 범위내로 한다.

제 5조(양허관세추천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및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 2009-427호(2009. 12. 24) 제7조에서 “기타 추천대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2. 원료사용 및 제품생산 계획서 1부.
3. 물품매도 협약서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대행계약자에 한함)

제 6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골판지조합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
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제 7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
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 부 사후관리

제 8조(사후관리사항) 골판지조합은 양허관세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후 관리한다.

1. 양허관세추천 품목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양허관세추천 물량에 대한 사용량·재고량 등의 보고일치 여부에 관한 사항.
3. 수불관리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9조(사후관리방법) 제12조에 의한 양허관세추천 품목의 사후관리는 서면보고를 기본으로 하되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골판지조합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0조(점검결과보고) 골판지조합은 제12조에 의하여 현장 확인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사용기록정리)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원자재의 수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발생시마다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 12조(행정처분신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실수요자는 그 사실을 골판지조합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골판지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허관세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
2. 원료사용실적, 원료재고량 및 제품생산량 등

제 14조(제재 및 보고)

- ①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제8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에 대해 별표 1의 제재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 ②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전항에 의한 조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기타) 본 요령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및 지시에 따르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및 지시에 의거 본 요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신청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일자	용 도

유효기간 만료일 : 2010. . 까지

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9-427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10. .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진수 (인)

(별지 제2-1호 서식)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농림수산물식품부 고시 제2009-427호	
2010. . .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진수 (인)	

(별표 1)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위 반 내 용	관련 조항	위 반 회 수 별 제 재 기 준		
		1회	2회	3회 이상
1.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원자재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외 사용한 경우	제 3조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3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취소
2. 사후관리 보고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 13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3.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 11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4. 현장점검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경우	제 9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5. 양허관세 추천대상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 12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정지

2. 추천대상자 및 물량 배정기준

가. 추천 대상자

1) 옥수수전분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
- ② 음·식료품 등을 포장하는 포장재로서 전분용기를 생산하는 자

2) 변성전분 및 매니옥전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

나. 추천대상자별 물량 배정기준

- 2010년 총 소요계획량(수입+국산) 및 2009년 추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 정계획 물량대비 요건을 갖춘 업체별 총 소요계획량 비율로 배정

다. 수입관리방식 : 실수요자배정

3. 추천 신청

가. 추천신청기간 및 발급기간

- 1) 추천신청기간 : 연중(추천대상자별로 배정된 물량 범위 내)
- 2) 발급기간 : 연중
- 3) 유효기간 : 교부일로부터 1개월로 하되 30일 기준이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임

나.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 (별표 1, 또는 전자민원시스템(www.utradehub.or.kr) 에서 작성)
- 2)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최초 추천 신청시 1회에 한함)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③ 공장등록증 및 골판지제조기 보유 증명사본 각 1부
 - ④ 전분사용 용도 설명서(임의 양식)
 - ⑤ 전분 투입제품 생산 공정도(임의 양식)
 - ⑥ 2010년도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타피오카전분 수급계획(안)
 - ⑦ 기타 실수요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 3) 물품매도 약약서(Offer Sheet 또는 Invoice 등) 1부
- 4) 수입대행계약서 1부(대행계약자에 한함)

(별표 1)

접수번호 :		처리기간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분	신청인 (납세의무자)			수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신청내용						
H·S	품명	수량	금액	수입선	수입예정일자	용도
<p>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9-427호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귀하</p>						

(별표 2)

2010년도 옥수수전분, 변성전분, 매니옥전분 수급계획(안)														(단위:TON)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옥수수 전분	국내													
	수입													
변성 전분	국내													
	수입													
타피오카 전분	국내													
	수입													

※ ① '10년도 사용예상량 기재
 ② 위 사용예상량을 기준으로 연간 배정량 산정 예정임

업체명 : _____
 대표자 : _____ 인
 담당자 : _____ 인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별표 3)

최근 월별 원료(옥수수전분·변성전분·타피오카전분)·제품(골판지) 수급실적 및 계획																		
구분	년월	이월			구입			합계			사용			재고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원료 (옥수수 전분, kg)																		
구분	년월	이월			생산			합계			판매			재고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SW	DW	SW	DW										
제품 (골판지, m ²)																		

※제품 m²당 생산시 원료(옥수수전분) 소요량 SW인 경우 g(A/F), g(B/F), g(E/F),
 DW인 경우 g(AB/F), g(BB/F), g(EB/F)
 편면인 경우 g(생산 골을 표기)

※표시단위는 소수점 3자리까지 나타내며, 각 사별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나타냄.

(별표 4)

각 서

귀 조합에 공업용 전분(옥수수전분, 변성전분)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전분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약속 하며, 만약 불법유출, 용도 외 전용,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귀회 및 관계법 령에 의한 수입추천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 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회사명 :

소재지 :

대 표 : (인)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귀하